

#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8,497,367	18,254,921
일반회계	588,463,352	17,653,901
특별회계	20,034,015	601,020
기타특별회계	20,034,015	601,02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04,495	18,135
건축진흥특별회계	121,757	3,65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	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984,696	149,541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020,049	210,601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04,132	3,124
수질개선특별회계	57,272	1,7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9,794	21,894
상수도특별회계	6,381,820	191,455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36,00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